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492호(號) 1931(昭和 6)년 12월 26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631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2(昭和 7)년 1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12월 2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국선(局線) 내(內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중(中) 갱목(坑木)의 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갱목 (坑木)	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	신봉산(新鳳山), 대동강(大同江), 평양(平壤), 서평양(西平壤), 만성(萬城), 선교리(船橋里), 사동(寺洞), 미림(美林), 승호리(勝湖里), 대평(大平), 기양(岐陽), 회령(會寧), 천내리(川內里), 봉의(鳳儀), 계림(鷄林)	차 급 (車扱)	350km(浬)까지 1할(割) 감(減) 351km(浬) 이상(以上) 2할(割) 감(減) 501km(浬) 이상(以上) 3할 할인
	동(同)	단	동(安東) 동(同)	350km(浬)까지 1할(割)5푼(分) 감(減) 351km(浬) 이상(以上) 2할(割)5푼(分) 감(減) 501km(浬) 이상(以上) 3할(割)5푼(分) 감(減)